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 5. 4 선고 2020가단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4. 13.

판 결 선 고 2021. 5.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8. 9. 20. 체결된 매매예약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 9. 27. 접수 제90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C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2015가단11319(본소), 2016가단2985(반소)]은 2019. 11. 28. “C는 원고에게 27,802,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5%,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C가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2019나8687호)은 2020. 9. 16. C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2020. 10. 6. 확정되었다.

나. C의 아들인 피고는 2018. 9. 27.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는 2018. 9. 20. 피고와 사이에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바(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인 C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역

별지

목록

1. 경상북도 영덕군
대 247㎡

2. 경상북도 영덕군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소매점 127.7㎡

2층 사무소 127.7㎡

3층 단독주택 114.1㎡

